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3. 9. 1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강남구청장(생활체육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(2023. 9. 1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9조의2)
  - 2023년 12월 31일 ⇒ 2028년 12월 31일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입법예고(2023. 5. 26. ~ 2023. 6. 15.) 결과, 특기사항 없음
 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가 예정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는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일부개정안은 이 중 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만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체육진흥을 위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가 예정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연장의 필요성은 높으나, 기금의 세입과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한 상황임.

○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(기금의 용도)<sup>1)</sup>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, 필요하다면 정책연구용역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실무부서에서는 강남구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, 기금사업과 일반 회계사업을 구분하여 중장기 추진 계획 또한 검토해야 할 것임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

1) 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개정 2009.12.18>

1. 체육관,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
2.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
3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활동
4. 체육진흥을 위한 문화·예술 공연
5.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 
<개정 2016.7.8.>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8. 18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생활체육과

## 1. 제안이유

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9조의2)

- 2023년 12월 31일 ⇒ 2028년 12월 31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 5. 26. ~ 2023. 6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절차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.

### 4. 작성자

- 생활체육과 행정8급 나은영(02-3423-6345)